

◎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0-794호

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공람 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43호(2008.12.11.), 제2009-341호(2009.9.10.), 제2010-195호(2010.5.27.), 제2013-111호(2013.4.4.), 제2014-284호(2014.8.7.),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8-40호(2008.12.26.), 제2009-2호(2009.1.12.)호로 재정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10-31호(2010.9.20.)로 사업시행인가, 2011-36호(2011.6.20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15-50호(2015.9.24.), 제2016-31호(2016.6.2.), 제2019-22호(2019.4.4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제2018-3호(2018.1.18.), 제2020-18호(2020.2.6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11일

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1. 공람기간 : 2020. 6. 11. ~ 2020. 6. 25.
2.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
 - 양천구청 도시계획과(☎2620-3514)
3. 변경인가신청 내용
 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 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1)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0-41번지 일대
 - 2) 면 적 : 19,599.5㎡
 - 다. 정비사업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180개월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사업시행자 :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
 - 주된 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37, 306호
5. 사업시행인가일 : 2010. 9. 20.
6. 변경내용 및 사유
 - 가. 사업시행기간 변경
 - 사업시행인가일 ~ 120개월 → 사업시행인가일 ~ 180개월
 - (사유 : 건축계획 변경 및 시공사 재선정 절차 진행 등에 따른 일정 지연)

나. 자금계획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증 감	비 고
금 액	191,215,415,440	209,056,575,104	증) 17,841,159,664	

다. 토지분할에 따른 필지수 변경

동 명	변경 전		변경 후		비 고
신정동	1152-30	대	1152-30	대	
			1152-43	대	
	1152-32	도	1152-39	도	
	1153-35	도	1153-37	도	
			1153-38	도	
	1225	도	1225-2	도	
			1225-3	도	
			1225-4	도	
	1226	도	1226-3	도	
			1226-4	도	
			1226-5	도	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: 생략

8. 기타 : 생략(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)

9.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,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람기간 내에 양천구청 도시계획과(☎2620-3514)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